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의 인식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보안, 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침해행위의 발생유형·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현황 및 그 양성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현황
6.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재원조달 현황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12. 금융위원회
13. 공정거래위원회
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5. 전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전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사전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 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 자격
2.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2. 선정평가 기준
3. 지원 내용 및 기간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기업 등이 제출한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1. 선도사업의 타당성
2.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3. 참여 기업 등의 역량
4. 선도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 등의 협업 활동
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4.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인증획득
 5. 산업데이터 관련 보안, 표준화, 품질개선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12. 그 밖에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제9조(규제개선 지원 등) ①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 제출 등) ①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1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협업지원센터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1조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등의 협업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기술·인력 등 정보 제공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담·자문
5. 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산업데이터 표준화 지원
7.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지원
8.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관한 지원
9.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지원
10.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지원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보교환
2.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시회·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전환위원회 운영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지원
5. 법 제12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지원
6. 법 제13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의 촉진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업무
8.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9.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지원·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등에 관한 업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
14.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7조 (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제18조(협회의 업무 및 운영)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인력양성
4.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제공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5.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등의 국제교류 지원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9조(업무의 위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및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4. 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5.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6.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